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안내문 (예비 입주자 포함)

## 덕소강변 라온프라이빗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

아래의 일정 기간 내 견본주택에 방문 및 자격확인서류(부적격 소명자료)를 제출하시어 적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세대주, 세대원, 주소지, 거주기간, 주택소유,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 등)

- 일 정 : 2021년 05월 08일(토)~05월 13일(목), 6일간(10:00~17:00)
- 장 소 : 덕소강변 라온프라이빗 견본주택(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-3)
- 예약방법 : 당사 홈페이지(<http://www.deokso7raon.com/>) → 방문예약 메뉴

※ 당사 견본주택은 당첨자 대상으로 방문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상기 예약방법을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 ※ 방문 시 견본주택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, 기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(추후 주차장 별도 안내 예정)  
 ※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류접수는 당첨자 또는 서류제출자 외 동반 1인 이외에는 출입할수 없습니다.(임산부,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는 기급적 방문을 자제하시고 대리인을 통하여 서류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 
 ※ 본 안내문은 공휴일 등으로 인해 우편수신이 늦어짐을 양해 바라며, 개별 문자 및 전화로 안내 진행 예정입니다.  
 ※ 계약서 발급은 추후 지정계약기간 내 발급하오니, 추후 지정계약기간 내 반드시 견본주택에 내방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

### 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필수 제출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※ 조회기간 :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(기록대조 시작일 : 생년월일 / 기록대조 종료일 : 공고일 현재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혼인 확인 또는, 만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제출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세대원	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)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위해 제출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,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
신혼 부부 특별 공급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/ 조회기간 :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서류) 제출 ※ 뒷면 [소득증빙서류] 참조
	○	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(임신진단서에 한함 그 외 서류 인정불가)제출 (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계약 시 작성 ※ 견본주택 비치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입양의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"상세"로 발급 ※ 재혼가정의 자녀(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)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	○		기본증명서(상세)	자녀	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
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	근로자 및 배우자가 아닌 경우 작성 ※ 견본주택 비치	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안내문 (예비 입주자 포함)

## 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 :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) ※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,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휴직유형 명시-예시 :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)	① 해당직장 / 세무서 ② 해당직장
	금년도 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무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,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①, 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 : 직인날인)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무자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, 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*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*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	①, 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②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	①, ②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	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① 세무서 ② 등기소
	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③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① 세무서 ②, ③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*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*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① 계약 시 작성 ※ 견본주택 비치	

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 
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  
 ※ 소득증빙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사업주체는 서류 접수 이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